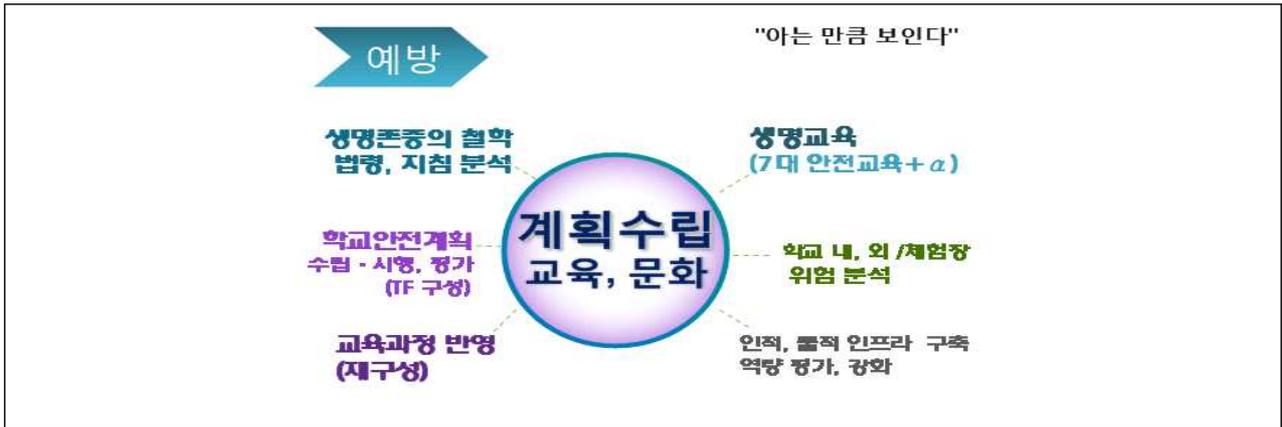


I. 개요



1. 근거(관련 법령 등)

- ▶ 유치원 경기도안전교육과정(2018년 10월 개발)
- ▶ 2019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교수학습지원과-46640(2018.12.27.)]

2. 비전과 목적

비전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생

유아들에게 체계적인 실천중심의 안전 교육을 통하여 유아 자신이 안전에 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우발적인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3. 방침

- ▶ 유치원 연간 학사일정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 발달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체험위주의 7대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운영한다.(연2회 이상 대피 훈련 포함)
- ▶ 시설 안전 점검을 주 1회 실시한다.
- ▶ 성폭력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 학기 초 전체 유아를 안전 공제회에 반드시 가입한다.
- ▶ 급·간식 제공 시 식중독 예방

II. 세부 추진 계획

1. 사업 추진 계획

사업명	활동내용	시기	비고
1. 안전점검	유치원 실내, 외 시설과 설비 안전점검 실시 안전사고 예방 위원회 조직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 실시 '학교 안전주간' 운영으로 안전 문화 조성	매월 4일 3월 1학기 중 매월 1주	행정실장 초등 연계
2. 부모교육	안전교육 자료 홈페이지 탑재 및 부모교육 안내창 배부 현장체험학습 관련 사전 안전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월 1회 연 1회 연 1회	1시간이상
3. 지역사회연계 안전교육	성교육 및 아동권리교육: 굿네이버스 약물 오남용 교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방교육: 시흥소방서(유-초연계) 교통안전교육: 경기도교통연수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유-초연계)	연 1~2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연 2회	지역사회 자원활용
4. 안전교육과정 구성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민주시민교육 청렴교육 행사 및 현장체험 사전안전교육	연중
5. 교사연수	모든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직무연수 실시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현장체험학습 관련 사전 안전 교육 실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전교육과정 편성지침 반영 : 안전교육과정 전반을 통하여 민주시 민교육, 청렴교육을 강조하여 편성	연중 4시간 4시간이상

2. 연간 안전교육 계획

월	지도내용	나침반 교육	재난 대비 훈련	안전통신문	시수
3	(실종유괴예방)유괴상황에 대해 알아요 (신체활동안전)실외놀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해요 (교통안전)약속을 지켜요 (아동학대예방)우리는 소중한요 (인터넷중독예방)인터넷 게임 중독은 위험해요	3월 나침반 안전 교육 실시 ↓		1 미아 사고는 예방할 수 있어요(실종 유 괴예방) 2 유아기 성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성폭 력 예방)	생1 생2 교1 폭1 약1
4	(실종유괴예방)아동 안전 지킴이 집은 무엇일까요? (시설·제품이용안전)교실에서 안전하게 활동해요1 (교통안전)어른 손을 잡고 안전하게 걸어요 (성폭력 예방)기분 나쁜 접촉은 싫다고 말해요 제대로 먹으면 약 잘못 먹으면 뭘 보호장구를 착용해요	4월 나침반 안전 교육 실시 ↓		3 아동학대예방 지킴이가 되어주세요(아동학 대) 4 부모는 자녀의 안전 선생님(생활안전)	생3 생4 교2 폭2 약2 직1
5	(실종유괴예방)부모님 선생님께 알려요 (신체활동안전)안전하게 공놀이를 해요 (교통안전)안전하게 길을 건너요 (아동학대예방)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몸에 해로운 약물이 들어있는 음료수가 있어요 미세먼지 행동요령 노래	5월 나침반 안전 교육 실시 ↓		5 유괴 및 납치를 피하는 예방법 7가지(실 종 유괴예방) 6 유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오해와 진실(성 폭력)	생5 생6 교3 폭3 약3 재1
6	(실종유괴예방)아무나 따라가지 않아요 (시설·제품이용안전)무빙워크 안전을 알아요 (교통안전)교통안전 표지판을 알아보아요 (성폭력 예방)나의 몸은 소중한요 하얀 연기 속의 비밀 불이야 불이야	6월 나침반 안전 교육 실시 ↓		7 부모님은 아이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아동학대) 8 안전생활은 습관이에요.(생활안전)	생7 생8 교4 폭4 약4 재2
7	(실종유괴예방)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 양 (신체활동안전)즐거운 물놀이 (교통안전)비가 오는 날에도 안전하게 걸어요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이 아파요	7월 나침반 안전 교육 실시	초등학교 와 통합 운영	9 이물질 사고예방(약물오남용)	생9 생10 교5 약5

	태풍, 집중호우 위험해요 다쳤어요, 도와주세요	↓			재3 응1
8	(실종유괴예방)유치원 가는 길	8월 나침반 안전 교육 실시	초등학교 와 통합 운영	10. 이것만은 꼭 지켜요(실종유괴예방) 11.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수칙(성폭 력예방)	생11
	(교통안전)지하도로를 안전하게 건너요	↓			교6
9	(실종유괴예방)길을 잃었어요 (신체활동안전)안전하게 등산을 해요 (교통안전)골목길에서 자동차를 만나면 스마트폰 중독예방 약속 정하기 캠, 폭발은 무서워 일터의 안전시설을 알아보아요	9월 나침반 안전 교육 실시			생12 생13 교7 약6 재4 직2
	(실종유괴예방)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요청해요1 (시설제품이용안전)우리 몸에 좋은 음료 (교통안전)자전거를 타기 위해 준비해요 (아동학대예방)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해요 얼굴은 안 보여도 마음이 보여요 멈춰요. 옆드려요. 뒹굴어요.	↓			생14 생15 교8 폭5 약7 재5
	(실종유괴예방)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요청해요2 (신체활동안전)키보드를 안전하게 타요 (교통안전)안전띠를 매요 (성폭력 예방)나의 몸을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 약은 올바르게 보관해야 해요 지진이 났어요	11월 나침반 안전 교육 실시			생16 생17 교9 폭6 약8 재6
12	(실종유괴예방)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요청해요3 (시설제품이용안전)앗 위험해요 (교통안전)대중교통이란 무엇일까요? (아동학대예방)물건을 던지지 않아요 인터넷을 바르게 사용해요	12월 나침반 안전 교육 실시			생18 생19 교10 폭7 약9
	(성폭력 예방)좋은 느낌 싫은 느낌 안전하게 약을 버릴 수 있어요 응급처치송	↓ 1월 나침반 안전 교육 실시			학교 안전정보센터 바른 아이 문치

참고자료 및 참고 사이트

- 유치원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수정본
- 누리과정 지도서

- 유치원 경기도안전교육과정

구분	안전교육 영역							운영시간	
7대 안전교육	생활 안전 교육 (13시간 -학기당 2회 이상) 기타 (9시간)	실종유괴 (4시간)	교통 안전 교육 (10시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8시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10시간)	재난 안전 교육 (6시간)	직업 안전 교육 (2시간)	응급 처치 교육 (2시간)	51시간
아동 안전교육	실종·유괴 예방 방지교육 (10시간)	교통 안전 교육 (10시간)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8시간)	감염병 및 약물오용·남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10시간)	재난 안전 교육 (6시간)				44시간
성교육, 인터넷 중독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1시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 (연 1회)					연1회
공통 운영시간	19시간	10시간	8시간	10시간	6시간	2시간	2시간	57시간	

3. 기대효과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안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 기능을 함양하여 스스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III. 비상 대책 계획

▷ 본교 위치도



▷ 비상 대피 조직도

지 휘 부 : 원장
총 괄 : 원감
비상상황진단 및 대피명령, 구조요청

연 락	대 피	구 조	협 조
한솔반 담임(만5세)	방과후 전담사	한별반 담임(만4세)	행정실장
.비상상황 발생 시 지휘부에 상황보고 .경보방송(긴급한 경우 방송 후 상황보고)	.신속한 대피지도 .인원 점검 및 보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환자 돌보기 .환자의 상황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	.민관군동원 협조요청 (119구조대,교통경찰, 민방위조직대 보건소 등)

▷ 비상 대피 훈련 과정

구 분	시 간			내용(행동요령)
	부터	까지	소요	
재난훈련 준비	09:40	10:00	20분	대피훈련을 위한 준비
	10:00	10:01	1분	지진대피 및 화재대피 현장훈련 안내방송
	10:01	10:10	9분	관련 PPT 상영
재난경보/ 훈련실시	10:10	10:15	5분	재난경보 사이렌 발령 및 책상 밑으로 대피
	10:15	10:25	10분	화재경보 발령 및 운동장으로 대피
	10:25	10:30	5분	경보해제 및 인원파악
	10:30	10:35	5분	원장선생님 훈련평가
	10:35	10:40	5분	교실로 이동

1. 유치원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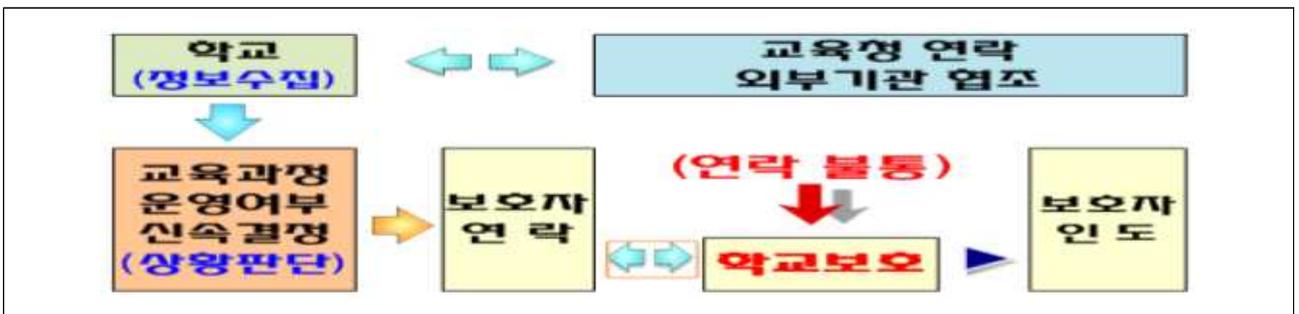
담당	역할	내용
원 감: 000	총괄	○ 안전교육 계획 총괄
안전부장: 000	계획 수립 및 추진	○ 안전교육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행정실장: 000	시설관리 및 행정지원	○ 원 내.외 시설물 안전점검(수시 및 정기점검) -정수기수질검사, 전기안전, 소방시설 정기점검 등 -실내.외 시설 청결관리, 유원장 모래 놀이 소독 -학교안전관리공제회 가입
각반 담임교사	안전교육	○ 교육계획에 의한 안전교육 실행

2. 유치원 비상대책반 구성

- 구성 : 교직원 및 대책자문기구 포함 적정인원 구성
- 조직(감염병 대응 예시)



※ 교육과정 운영 중(현장체험학습 포함) 재난발생 시 대응 절차



- *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은 지역사회 전체에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킴으로 원생의 통학로 유실, 가정도 피해를 입었을 것을 가정하여 대응
- *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원생을 직접 인솔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

3. 지역재난대응 및 응급구조기관 비상연락망

가. 시흥119안전센터 : 031-310-0501 경기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

나. 시흥소방서 정왕119안전센터 : 031-310-0521 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259번길 1

다. 센트럴 병원(종합병원) : 031-8041-3000 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 237

4. 비상경보발령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구분	주 수단	보조 수단	정전 시 수단	비고
접수(외부)	재난위험경보사이렌	유선	가두 방송	시흥시청
전파(내부)	초등학교내 방송	음성방송, 호루라기	메가폰, 육성, 호루라기	방송실, 교무실

III. 대비 활동

1. 유치원 재난대응훈련계획의 수립/배포와 실제훈련 (소등과 연계함)

가. 추진일정

시 기	구 분	세 부 실 천 내 용	대 상	비고
5월 예정	안전한국훈련 관련 지진(해일) 훈련&소방서 합동 화재대피 훈련	- 전교생 및 전 교직원 대상으로 훈련 실시 - 시흥소방서 협조 하에 소방 훈련 및 안전한국훈련 관련 지진(해일) 및 화재(화산) 대피훈련 동시 실시	전학년 및 유치원 전교직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기자재 사용
3,5,9,10월	재난대비훈련 /민방위 훈련	- 전교생 및 전 교직원 대상으로 훈련 실시 - 화생방 훈련, 화재 및 지진 대비 대피훈련, 해일 및 화산 대비 대피 훈련 실시(연 3회 이상)	전학년, 유치원 전교직원	
(가) 매월	학생안전교육실시 (나침반5분 안전교육)	(나) ◦ 전교생을 대상으로 매일 방송으로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실시	전학년 및 유치원	

나. 교직원교육

- 학교안전담당교사가 재난별 행동요령을 직원연수를 통해 매달 안내

다. 학생교육

- 재난 및 비상시 안전행동요령 지도
- 시청각자료, 학교 교내방송 및 홍보물 등을 활용한 교육실시
- 홍보물 게시 및 학교 방송활용
- 경보발령과 동시에 전 교직원·학생 대피를 원칙으로 하되, 학년별·반별로 실제 대피
- 재난 및 비상시 장애유아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력자를 지정하여 대피를 도움

IV. 비상 시 대응절차와 행동수칙

무단(불법)침입/인질극

1. 목적

본 부속서는 운동장이나 학교 건물 내에서 불법침입자나 거동수상자를 발견하였다거나 인질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생/교직원의 생명과 학교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내에서 폭력을 휘두를 것으로 보이는 불법침입자나 거동수상자를 만나거나 보게 된 모든 교직원들은 자신들이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질극이 발생한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불법침입 또는 인질극 발생으로 인해 경찰을 불러야 하는 경우, 사건현장에 관한 법적 지휘권을 가진 경찰의 지시를 따르고 이들과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책임

1) 모든 교직원들은 학교(유치원)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트레이닝을 사전에 받아 놓아야 한다.

- 시간적으로 가능하다면, 학교(유치원)장/학교(유치원)사고지휘관/학교(유치원)전담경찰관에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신고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른다.
- 만일 교직원이 무단침입자에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 다른 동료 교직원들과 동행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이들로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무단침입자에게 점잖게 인사를 건네고 자신이 누구임을 밝힌다.
- 무단침입자에게 학교(유치원)를 왜 방문했는지 묻는다.
- 무단침입자에게 학교(유치원)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경비실(또는 행정실)에서 방문일지를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이들과 동행하여 경비실(또는 행정실)로 이동한다.
- 만일 무단침입자의 학교(유치원) 방문 목적이 불법적인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들에게 학교(유치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한다.
- 무단침입자가 학교(유치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동행한다.

만일 무단침입자가 학교(유치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무단침입자가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학교(유치원)에 계속 있게 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 만일 무단침입자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단 이들과 맞닥뜨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무단침입자들과 만난 당시의 상황(이들을 발견한 장소, 이들의 인상착의, 이들이 소지한 무기(흉기) 또는 (소지품)을 파악한다.
-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상황에서 무단침입자와 시각적 접촉을 유지한다.
- 학교(유치원)사고지휘관/학교(유치원)장 또는 경찰(112)에 학교(유치원)에 무단침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무단침입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한다(되도록이면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무단침입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다)
- 학교(유치원)장/학교(유치원)사고지휘관은 교육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락다운을 발령한다거나 상황이나 경찰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실행한다.

2) 인질극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여 잡혀 있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인질(학생)의 안전이다. 교직원 등은 인질들이 학교(유치원) 밖으로 끌려나가지 않도록 이들을 지켜야 한다. 모든 교직원들은 인질극이 벌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 만일 인질극을 벌이는 자가 당신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 끼어들지 않는다.
- 학교(유치원)장/학교(유치원)사고지휘관이나 학교(유치원)보안관(이들에게 인질극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112 경찰신고)에게 인질극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린다.

학교(유치원) 교직원 또는 학생들이 인질이 된 경우,

- 인질범의 지시에 따른다.
- 인질이 된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한다. 학생들이 있는 경우 침착하게 행동하도록 한다.
- 가능한 한, 인질범들에게 당황하지 않고 처분하게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인질범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 인질범에게 말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고 말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이들과 언쟁을 벌인다거나 어떤 제안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학교(유치원)장/학교(유치원)사고지휘관

- 즉시 112에 신고한다. 인질범의 수와 인상착의, 인질극이 벌어진 정확한 장소, 학교(유치원)가 취한 조치(락다운 또는 폭발물을 소지한 인질범에 의한 대피) 등과 같은 상세한 상황을 알려준다. 인질협상팀에게 자신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
- 락다운 또는 상황에 적합한 필요 조치를 실시한다.
- 학교(유치원) 건물 바깥에 위치한 교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들을 학교(유치원) 밖의 지정된 집합장으로 이동시키도록 지시한다.
-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를 격리시키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인질범에 대항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 교육장에게 인질극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가동시킨다.
- 인질범과의 협상을 위한 팀이 도착하는 경우, 이들에게 현장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다.
- 발생한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4) 교사와 직원

- 교직원은 락다운 또는 지시가 내려진 절차를 실행한다. 만일 학교(유치원) 건물 밖에 있는 경우 학생들을 지정된 집합장으로 이동시킨 후, 지시를 기다린다.
- 모든 사람들은 경찰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신들이 있는 장소에 머물러 있도록 한다.

(출처 : 「학교 현장 실전대비 훈련계획의 수립과 실행 가이드, 2016. 1 배포예정, 교육부)

한파 단계별 대응 기준(경기도교육청)

1.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2017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업무 추진계획 알림」(재난예방과-6890(2017.11.02.)호)
- 「재난대비 학교(유치원)현장 행동매뉴얼」(2017.02.)

2. 개념

- 한파: 저온의 한랭기단이 몰아닥쳐 기온의 급격한 하강을 일으키는 현상

구분	발령 기준(발령기관 : 기상청)
한파주의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3.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구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치원, 각급학교(유치원)
평시 (겨울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상황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상황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상황 모니터링 · 한파 대비 학생 행동요령 교육 (동상, 저체온증, 낙상 등 예방) · 비상연락망 점검 및 정비 · 취약시설 안전점검
한파 주의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상황 모니터링 · 상황전파 및 대응조치 안내 · 대응상황 모니터링 · 비상근무(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상황 모니터링 · 상황전파 및 대응조치 안내 · 대응상황 확인 · 비상근무(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상황 모니터링 · 등·하교시간 조정 검토 · 실외수업 자제 · 한파 대비 학생 행동요령 실천 · 실내 적정온도 유지 ·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학교(유치원)진입로 등 결빙구간, 동파방지, 전열기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 등)
한파 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상황 모니터링 · 상황전파 및 대응조치 안내 · 대응상황 모니터링 · 비상대책반 운영(필요시) ·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결정 후 학교(유치원) 통보 (단, 광범위한 지역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상황 모니터링 · 상황전파 및 대응조치 안내 · 대응상황 확인 · 비상대책반 운영(필요시) ·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결정 후 학교(유치원) 통보 (단, 관할 지역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상황 모니터링 · 등·하교시간 조정, 휴업 등 조치 검토 및 보고* (조치시 학생·학부모 안내 철저) · 실외수업 금지 · 한파 대비 학생 행동요령 실천 · 실내 적정온도 유지 ·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학교(유치원)진입로 등 결빙구간, 동파방지, 전열기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 등) · 피해발생시 응급조치, 복구 및 보고

V. 복구 활동 계획

1. 외상 후 스트레스의 모니터링과 서비스 제공

외상 후 스트레스	주요증상 관찰(담임 및 보건교사)	대처요령
사고, 자연재앙, (성)폭력 등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한 증상은 3가지 첫째, 꿈이나 반복되는 생각을 통해 외상의 재경험 둘째, 외상과 연관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거나, 무감각해짐 셋째, 자율신경계가 과 각성되어 쉽게 놀라고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짜증증가 등을 느끼는지 관찰	- 지지와 격려로 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줌. - 대처 방법 교육 - 이후 약물 치료와 정신치료 지원

2. 시설 복구

가. 재난 발생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 유선 보고 및 서면 보고

(1) **유선 보고체계** : 긴급 필요한 조치 후에 **먼저 30분 이내 유선으로 해당교육지원청, 북부청사 재난예방과 동시 보고**

유선동시보고 	<해당교육지원청> - 평 일 : 관재(방재)담당 - 야간·공휴일 : 당직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 평 일 : 재난예방과 방재재난관리담당 820-0727~8(FAX 820-0749) - 야간·공휴일 : 북부청사 당직실 820-0514, 0524(FAX 821-1023)

※ 우선적으로 인명대피, 소방서 신고, 비상연락, 진화 등의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유선상황보고 및 당일 서면보고 실시

(2) **서면 보고체계**(붙임3 보고양식에 의거 당일 보고)

- 직속기관 → 북부청사(방재재난관리담당, 당직실) 보고
-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지원청(관재담당, 당직실)에 보고 → 북부청사(방재재난관리담당, 당직실) 보고

나.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재난관련 보상 신청

3. 피해보상의 청구 등

가. 학교안전사고의 정의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나. 교육활동의 정의

- 학교(이하 유치원 포함)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밖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

- 활동 · 과외활동 · 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 ·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 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학교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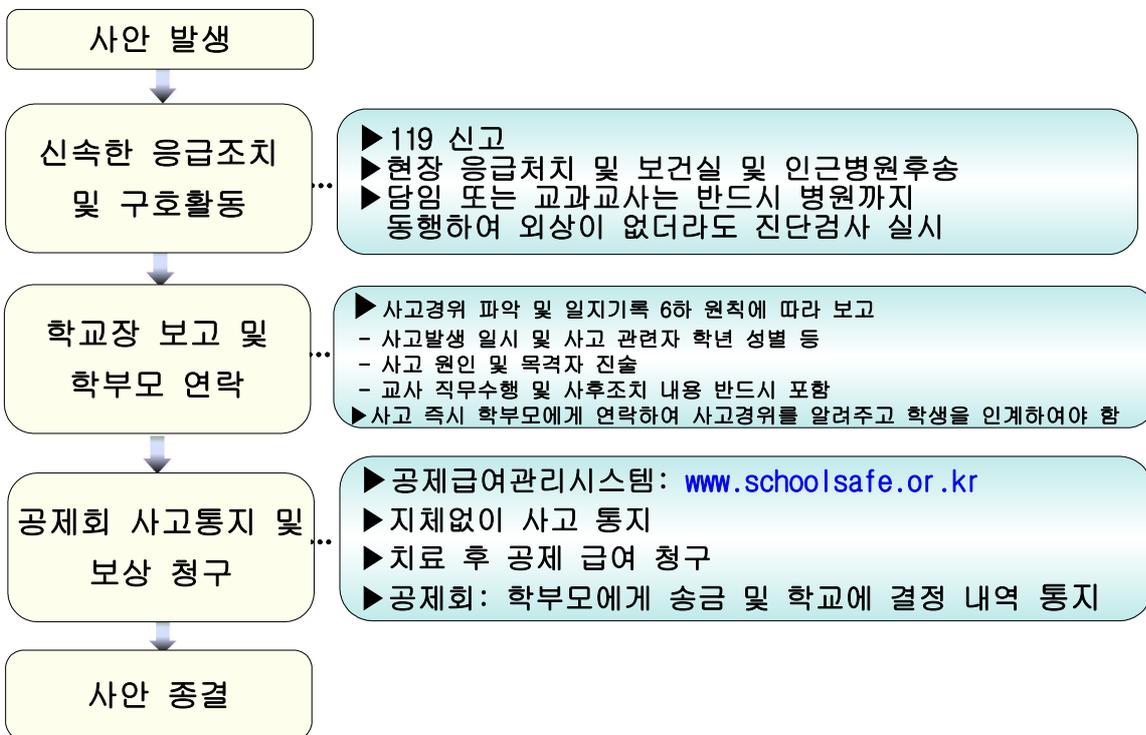
다. 교육활동참여자의 정의

- 학생 및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

라. 과실상계의 정의

- 공제급여대상자 본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공제급여액을 정함

<학교/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유치원 성폭력 예방 지침

생금초병설유치원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생금초등학교병설유치원기관의 장이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생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하 유치원)의 장과 소속 구성원(유치원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소속 원생 포함)으로 한다.

제3조(성폭력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유치원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예방교육 참석 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교육)

① 유치원의 장은 매년 연 초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③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 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유치원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유치원 장은 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